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21 선고 2021나331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21 선고 2021나3312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104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5. 24.

판결선고 2022. 6. 21.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10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3. 30. 접수 제12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조영인, 판사 임세영

별지